

工業所有權法중 特許法改正案

—PCT加入, 不實權利防止등 위해—

- ◎……特許廳은 工業所有權制度의 國際化 趨勢에 따라 特許協力 條約(PCT)……◎
- ◎……에 加入하는 것을 前提로 特許出願節次의 國際協力 및 技術情報의 擴散……◎
- ◎……을 통한 國內技術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國內的措置로써 特許……◎
- ◎……法中 改正法律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
- ◎……또한 不實特許權의 行使로부터 善意의 被害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特許……◎
- ◎……權効力의 一時停止에 관한 規定도 改正法案에 新設하고 있다. ……………◎

改正案 主要骨子

가. 特許協力 條約에 의한 國際出願의 관한 規定을 第8章의 2에 新設함.

나. 第1節에는 우리나라 特許廳을 통하여 國際出願을 하는 경우.

1) 國際出願을 할 수 있는 者를 우리나라 國民과 우리나라에 住所 또는 營業所를 가진 外國人으로 規定함(案 第157條의 2).

2) 出願人이 出願時에 提出하여야 할 書類를 規定하고 그 提出書類에 使用할 言語는 商工部 令으로 定하도록 하였음(案 第157條의 3).

3) 國際出願日은 原則적으로 出願書를 提出한 날로 하되 提出書類가 要件을 備한 경우에는 그 不備事項을 補正한 날을 國際出願日로 認定함(案 第157條의 4).

4) 出願書類가 補正期間內에 補正되지 아니하거나 所定의 手數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出願은 取下된 것으로 봄(案 第157條의 6).

다. 第2節에는 外國人이 우리나라에서 特許를 받고자 自國에 國際出願하는 경우.

1) 外國人이 自國에 出願한 날을 우리나라에 出願한 날로 認定함(案 第157條의 9)

2) 出願人이 優先權을 主張하는 경우에 그 立證書類 提出期間은 國內出願에 있어서는 出願日로부터 1年 3月이나 國際出願에 있어서는 PCT에 의거 1年 9月로 함(案 第157條의 10).

3) 國際出願書는 外國語로 作成되므로 出願人은 出願後 1年 8月以內에 翻譯文을 提出토록 하고 그 期間內에 翻譯文을 提出하지 아니한 때에는 取下된 것으로 봄(案 第157條의 11).

4) 國內出願의 公開時期는 出願日로부터 1年 6月이나 國際出願의 國內公開時期는 出願書翻譯文의 提出時期에 맞추어 1年 8月로 함(案 第157條의 14).

5) 出願變更 및 審査請求등은 出願書의 翻譯文을 提出하고, 手數料를 納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함(案 第157條의 16, 17).

6) 國際出願은 翻譯文에 의하여 審査하므로 出願書와 그 翻譯文이 一致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一致되는 部分에 한하여 特許를 許與토록 함(案 第157條의 19, 20).

라. 不實特許權의 行使로부터 善良한 被害者를 保護하기 爲하여 特許의 無效審判請求時 그 特許의 無效事由가 重大하고 明白한 경우에 그 特許權의 効力을 一時停止시킬 수 있는 根據規定을 新設함(案 第97條의 2).

다. 審査官도 利害關係인과 같이 無效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경우나 無效審判을 請求할 수 있도록 審査官의 無效審判請求制限規定을 削除함(案 第97條 第2項).

其他 參考 事項

가. 關係法令

나. 豫算措置

다. 合 議

라. 其 他

法律第 號

特許法중 改正法律(案)

特許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의 2 本文을 同條 第1項으로 하고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第1項의 他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이 第157條의 10 第1項의 國際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法 第29條의 3 第1項의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第157條의 21 第6項 또는 實用新案法 第29條의 11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을 포함한다)인 경우에 있어서 第1項의 適用에 關하여는 第1項中 “出願書에 最初에 添附한 明細書 또는 圖面에 記載된 發明 또는 考案”은 “國際出願日에 提出한 國際出願의 明細書, 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과 그 出願翻譯文에 다같이 記載된 發明 또는 考案”으로 본다.

第97條 第2項중 但書를 削除하고, 第97條의 2 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97條의 2 (審判請求와 特許權의 效力의 一時停止) ① 審査官은 第97條 第1項 第1號의 審判을 請求하는 경우에 審判請求의 對象이 된 特許의 無效事由가 重大하고 明白한 경우에는 그 特許權의 效力의 一時停止를 申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 그 事由가 妥當하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決定으로 그 特許權의 效力을 一時停止시킬 수 있다.

③ 第2項의 決定에 對하여는 그 決定의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0일內에 異議할 수 있다. 다만 그 異議는 第2項의 決定의 執行停止의 效力이 없다.

④ 第2項의 決定 또는 第3項의 異議는 本案審

判과 同時에 審理하여 이를 變更하거나 取消할 수 있다.

第8章의 2 特許協力條約에 의한 國際出願(第157條의 2내지 第157條의 21)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8章의 2 特許協力條約에 의한 國際出願

第1節 國際出願節次

第157條의 2 (國際出願을 할 수 있는 者) 大韓民國 國民 또는 大韓民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를 가지는 外國人(以下 “大韓民國國民等”이라 한다)은 特許廳을 1970. 6. 19 워싱턴에서 調印된 特許協力條約(以下 “特許協力條約”이라 한다)第10條에 規定된 受理官廳으로 하여 特許廳長에게 特許協力條約 第2條의 國際出願(以下 “國際出願”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大韓民國 國民等과 大韓民國 國民等 以外의 者가 共同으로 國際出願을 하는 경우 또는 商工部令으로 定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157條의 3 (際出願) ① 國際出願을 하고자 하는 者는 商工部令으로 定하는 言語로 作成한 出願書明細書 請求의 範圍, 必要한 圖面 및 抄錄을 提出하여야 한다.

② 出願書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當該出願이 特許協力條約에 의한 國際出願이라는 表示

2. 國際出願의 發明이 保護받기를 願하는 特許協力條約締約國의 指定.

3. 前號의 指定國중 特許協力條約 第2條(Ⅳ)의 地域 特許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趣旨.

4. 出願人의 姓名이나 名稱, 住所가 營業所 및 國籍.

5. 代理人이 있는 경우 代理人의 姓名 또는 名稱 및 住所 또는 營業所.

6. 發明의 名稱.

7. 發明者의 姓名 및 住所나 營業所(指定國의 法令에 發明者에 關한 事項의 記載가 指定되어 있는 경우에 限한다).

③ 特許協力條約 第5條의 明細書を 記載함에 있어서는 그 發明이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 者가 容易하게 實施할 수 있도록 明確하고 詳細하게 記載하여야 한다.

④ 特許協力條約 第6條의 請求의 範圍에는

保護를 받고자 하는 事項을 明研하고 簡潔하게 記載하여야 하며 明細書에 의하여 充分히 뒷받 침되어야 한다.

⑤ 國際出願에 關하여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 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57條의 4 (國際出願日) ① 特許廳長은 國 際出願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되는 경우를 除 外하고는 國際出願이 特許廳에 到達한 날을 特 許協力條約 第11條의 國際出願日(以下 “國際出 願日”이라 한다)로 認定하여야 한다.

1. 出願人이 第157條의 2에 規定된 要件을 充 足하지 못하는 때.

2. 第157條의 3 第1項의 商工部令으로 定하는 言語로 作成되지 아니한 때.

3. 第157條의 3 第2項 第1號, 第2號 및 第4號 에 揭記한 事項을 記載하지 아니한 때.

4. 明細書 또는 請求의 範圍가 提出되지 아니 한 때.

② 特許廳長은 國際出願이 第1項 各號의 1에 該當되는 경우에는 期間을 定하여 節次를 補正 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

③ 特許廳長은 國際出願이 圖面에 關하여 記 載하고 있으나 그 出願에 包含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趣旨를 出願人에게 通知하여야 한 다.

④ 特許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節次의 補正을 命받은 者가 期間內에 補正을 한 경우 에는 그 補正에 關係되는 書面의 到達日을 第3 項의 規定에 依하여 通知를 받은 者가 商工部令 으로 定하는 期間內에 圖面을 提出한 경우에는 그 圖面의 到達日을 國際出願日로 認定하여야 한다.

第157條의 5 (補正命令) 特許廳長은 國際出 願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期間 을 定하여 節次의 補正을 命하여야 한다.

1. 發明의 名稱의 記載가 없을 때.

2. 抄錄이 提出되지 아니한 때.

3. 第21條의 規定 또는 第157條의 7 第3項의 規定에 違反하였을 때.

4. 商工部令으로 定한 方式에 違反되는 때.

第157條의 6 (取下된 것으로 보는 國際出願等)

① 國際出願이 다음 各號의 1에 該當되는 경우 에는 그 國際出願은 取下된 것으로 본다.

1. 第157條의 5의 補正命令을 받은者가 指定 期間內에 補正을 하지 아니한 때.

2. 國際出願에 關한 手數料가 商工部令으로 定한 期間內에 納付되지 아니하여 特許協力條約 第14條(3)(a)에 該當되게 된 때.

3. 第157條의 4의 規定에 따라 認定한 國際出 願에 關하여 商工部令으로 定한 期間內에 그 國 際出願이 第157條의 4 第1項 第1號내지 第4號에 該當되는 것을 發見한 때.

② 國際出願에 對하여 所定의 手數料의 一部 가 商工部令에 定하는 期間內에 納付되지 아니 하여 特許協力條約 第14條 (3)(b)에 該當되게 되는 때에는 手數料가 納付되지 아니한 指定國 의 指定은 取下된 것으로 본다.

③ 特許廳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 여 國際出願 또는 國際出願의 指定國의 一部가 取下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事實을 出願人에 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157條의 7 (代表者等) ① 2人以上이 共同 으로 國際出願을 하는 경우에는 이 節의 規定에 의한 節次는 商工部令으로 定하는 경우를 除外 하고 出願人의 代表者가 그 節次를 行하거나 그 代表者에 對하여 節次를 行할 수 있다.

② 特許廳長은 2人以上이 共同으로 國際出願 을 하는 경우 出願人이 代表者를 定하지 않은 때에는 商工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出願人 의 代表者를 指定할 수 있다.

③ 代理人에 의하여 이 節의 規定에 의한 節 次를 行하고자 하는 者는 第21條의 規定에 따라 法定代理人에 의하여 節次를 行하고자 하는 경우나 其他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경우를 除外하 고는 辨理士를 代理人으로 하여야 한다.

第157條의 8 (手數料) 國際出願을 하는 者는 商工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納付하 여야 한다.

第2節 國際特許出願에 關한 特例

第157條의 9 (國際出願에 의한 特許出願) 特 許協力條約에 의하여 國際出願日이 認定된 國際 出願으로서 特許를 받기 위하여 大韓民國을 指 定國으로 指定한 國際出願은 그 國際出願日에 出願된 特許出願으로 본다.

第157條의 10 (優先權主張의 特例) ① 第42 條 第2項의 規定은 第157條의 9의 規定에 의하

여 特許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以下 “國際特許出願”이라 한다)의 優先權主張에 關하여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 國際特許出願의 優先權主張에 關하여는 第42條 第3項의 規定中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한 “者”는 特許協力條約 第8條(1)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한 “者”로 “謄本”은 “謄本” 또는 “寫本”으로 許特出願日로부터 3月內는 同條約 第21條(XI)의 優先日로부터 1年 9月內로 한다.

第157條의 11 (國際特許出願의 翻譯文) ①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은 特許協力條約 第2條(Xi)의 優先日(以下 “優先日”이라 한다)로부터 1年 8月 以內에 國際出願日에 提出한 出願書, 明細書, 請求의 範圍 및 圖面의 國語에 의한 翻譯文을 特許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第1項에 規定한 期間內에 第1項에 規定한 出願書, 明細書 및 請求의 範圍의 翻譯文의 提出이 없는 때에는 그 國際特許出願은 取下된 것으로 본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翻譯文을 提出한 出願人은 第1項에 規定한 期間內에 限하여 그 翻譯文에 加하여 새로운 翻譯文을 提出할 수 있다. 다만 出願人이 出願審査의 請求를 한 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國際出願日에 提出된 國際特許出願의 明細書 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에 記載된 事項으로서 優先日로부터 1年 8月(그 期間內에 出願人이 出願審査의 請求를 한 때에는 그 請求日, 以下 “基準日”이라 한다) 以內에 提出된 第1項 또는 第3項에 規定한 翻譯文(以下 “出願翻譯文”이라 한다)에 記載되지 아니한 것은 國際出願日에 提出된 國際特許出願의 明細書 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에 記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國際特許出願의 出願翻譯文은 第8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提出된 特許出願書 및 그 添附書類로 본다.

第157條의 12 (書面의 提出) ①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은 第157條의 11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翻譯文의 提出과 同時에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한 書面을 許特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1. 出願人의 姓名이나 名稱 및 住所나 營業所(法人에 있어서는 그 代表者의 姓名도 記載할 것).

2. 出願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나 營業所.

3. 提出年月日.

4. 發明의 名稱

5. 發明者의 姓名 및 住所나 營業所.

6. 國際出願日 및 國際出願番號.

② 特許廳長은 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提出하여야 할 書面을 第1項에 規定한 時期에 提出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出願人에게 期間을 定하여 그 書面의 提出을 命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書面의 提出을 命받은 者가 第2項에 의하여 指定한 期間內에 그 書面을 提出하지 아니한 때에는 特許廳長은 當該 國際特許出願을 無效로 할 수 있다.

第157條의 13 (國際段階에서의 補正) ①國際特許出願의 出願은 特許協力條約 第19條(1)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調査報告書를 받은 後에 國際特許出願의 請求의 範圍에 對하여 補正을 한 때에는 基準日까지 當該 補正書의 國語에 의한 翻譯文을 特許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正書의 翻譯文이 提出된 경우에는 그 補正書의 翻譯文에 의하여 第10條의 2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許請求의 範圍의 補正이 된 것으로 본다.

③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은 特許協力條約 第19條(1)에 規定한 說明書를 同條約 第2條(xix)의 國際事務局에 提出한 때에는 그 說明書의 國語에 의한 翻譯文을 特許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④ 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이 基準日까지 第1項에 規定한 節次를 밝지 아니한 때에는 特許協力條約 第19條(1)의 規定에 의한 補正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第10條의 2 第2項에 規定한 補正期限은 第2項에 規定한 補正에 關하여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57條의 14 (出願公開時期의 特例) 國際特許出願의 出願公開에 關하여는 第83條의 2 第1項中 “特許出願日(第42條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主張을 認定받은 出願에 있어서는 그 優先權主張日)로부터 1年 6”月은 “第157條의 11 第1項의 優先日로부터 1年 8月”로 한다.

第157條의 15 (補正의 特例) ①國際特許出願의 補正에 關하여는 第157條의 11 第1項 및 第157條의 12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節次를 밟고 第7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하여야 할 手數料을 納付한 後로서 基準日을 經過한 後가 아니면 第10條의 2 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補正(第157條의 13 第2項에 規定하는 補正을 除外한다)을 할 수 없다.

② 國際特許出願의 補正에 關하여는 第10條의 2 第2項中 8出願日(第42條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主張을 認定받는 出願에 있어서는 그 優先權主張日) 및 第10條의 2 第4項中 “特許出願日”은 “第157條의 11 第1項의 優先日”로 한다.

③ 國際特許出願의 補正이 可能한 範圍에 關하여는 第10條의 3中 “出願書에 最初에 添附한 明細書 또는 圖面에 記載된 事項”은 “國際出願日에 提出한 國際特許出願의 明細書 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과 그 出願翻譯文에 다같이 記載될 事項”으로 한다.

第157條의 16 (出願變更時期의 制限) 實用新案法 第29條의 2의 規定에 依하여 實用新案登錄 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에 關하여는 同法 第29條의 3 第1項 및 同法 第29條의 4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節次를 밟고 同法 第2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하여야 할 手數料을 納付한 後 同法 第29條의 11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 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에 關하여는 同項에 規定한 決定의 後가 아니면 第14條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許出願으로 變更出願할 수 없다.

第157條의 17 (出願審査請求의 時期制限) 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은 第157條의 11 第1項 및 第157條의 12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節次를 밟고 第7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하여야 할 手數料을 納付한 後 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이 아닌 者는 優先日로부터 1年 8月을 經過한 後가 아니면 第80條의 2 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國際出願에 關하여 出願審査의 請求를 할 수 없다.

第157條의 18 (國際調查報告書에 記載된 文獻의 提出命令) 特許廳長은 國際特許出願의 出願人에게 期間을 定하여 特許協力條約 第15條의 國際調查報告書에 記載된 文獻의 寫本을 提出하

게 할 수 있다.

第157條의 19 (拒絕査定의 特例) 國際特許出願의 拒絕査定에 關하여는 第82條 第1項中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는 “國際出願日에 提出된 國際出願의 明細書 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과 그 出願翻譯文에 다같이 記載되어 있는 發明 以外의 發明에 關하여 된 때(그것을 理由로 特許異議 申請이 있는 境遇에 限한다) 또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로 한다.

第157條의 20 (特許의 無效事由의 特例) 國際特許出願의 無效事由에 關하여는 第169條 第1項中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경우”는 “國際出願日에 提出된 國際出願의 明細書, 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과 그 出願翻譯文에 다같이 記載되어 있는 發明 以外의 發明에 關하여 된 경우 또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로 한다.

第157條의 21 (決定에 依하여 特許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 ① 國際出願의 出願人은 特許를 받기 爲하여 大韓民國을 指定國으로 指定한 國際出願이 特許協力條約 第25條(1)에 規定한 拒否 宣言 또는 認定을 받는 경우에는 商工部令으로 定하는 期間內에 商工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特許廳長에게 同條 (2)(a)에 規定한 決定을 하여줄 것을 申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申請을 한 者는 그 申請과 同時에 出願書, 明細書 請求의 範圍圖面 및 其他 商工部令으로 定하는 國際出願에 關한 書類의 國語에 依한 翻譯文을 特許廳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申請을 한 者 또는 하고자 하는 者는 特許協力條約 第2條(xix)의 國際事務局에 當該 出願書類의 寫本을 大韓民國으로 送付하여 줄 것을 商工部令으로 定하는 期間內에 請求하여야 한다.

④ 特許廳長은 第1項의 申請을 한 者가 第3項에 規定한 期間內에 第3項의 請求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第1項의 申請을 決定으로 却下할 수 있다.

⑤ 特許廳長은 第1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申請에 關係되는 拒否, 宣言 또는 認定이 特許協力條約 및 同規則의 規定에 따라서 正當하게 된 것인지에 關하여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⑥ 第5項의 規定에 依하여 特許廳長이 第5項

의 拒否, 宣言 또는 認定이 特許協力約條 및 同規則의 規定에 따라서 正當하게 된 것이 아니라 고 決定을 한 때에는 그 決定에 關聯되는 國際出願은 그 拒否宣言 또는 認定이 없었던 경우에 國際出願日로 認定할 수 있었던 날에 出願된 特許出願으로 본다.

⑦ 第1項의 拒否, 宣言 또는 認定을 받은 國際出願의 出願人은 第6項에 規定한 決定이 있을 때까지 그 國際出願에 關하여 第1項에 規定한 申請 및 그 申請과 關聯되는 節次以外的 節次를 밝을 수 없다.

⑧ 第157條의 10, 第157條의 11 第4項 및 第5項, 第157條의 13, 第157條의 14, 第157條의 15 第2項 및 第3項, 第157條의 18 내지 第157條의 20의 規定은 第6項의 規定에 依하여 特許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附 則

이 法律은 1970年 6月 19日 워싱턴에서 調印된 特許協力約條이 大韓民國에 對하여 協力을 發生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97條 第2項 및 第97條의 2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음號에는 實用新案法 改正法律案〉

7月の 메모

◁本會主要實行業務▷

- | | | | |
|---------------------------------------|---|-------------------------------|--------------------------------------|
| 1日 ◇特許公報 第720號 發刊 | 「느타리버섯栽培用 포트製造法」選定 報道依賴 | 24日 ◇第368回 이 週의 優秀發明 | 「壓力幫술에 있어서 蒸氣와 壓力을 이용한 節電스위치」選定 報道依賴 |
| 2日 ◇特許公報 第703號 發刊 | ◇第365回 이 週의 優秀發明 「2重捲線電流形 起動릴레이」選定 報道依賴 | 19日 ◇特許公報 第706號 發刊 | ◇意匠公報 第318號 發刊 |
| 3日 ◇實用新案公報 第555號 發刊 | ◇第39回 工業所有權短期研修講座(第1日次) | 20日 ◇發特協資料 274號「短期研修講座教材」發刊 | 26日 ◇實用新案公報 第558號 發刊 |
| 6日 ◇工業所有權相談 實施 | ◇工業所有權相談 實施 | ◇第39回 工業所有權短期研修講座(第2日次) | ◇發特協資料 275號「特許協力約條(PCT) 解說」發刊 |
| 7日 ◇特許公報 第704號 發刊 | ◇特許公報 第707號 發刊 | ◇工業所有權 大法院判例(4, 5, 6月分) 發刊 | ◇會誌「發期特許」(7月號) 發刊 |
| 8日 ◇第366回 이 週의 優秀發明 「廢棄物燃燒보일러」選定 報道依賴 | ◇第39回 工業所有權短期研修講座(第3日次) | 27日 ◇第45回 業種別(機械·金屬) 實務懇談會 開催 | ◇工業所有權相談 實施 |
| 12日 ◇實用新案公報 第556號 發刊 | 22日 ◇實用新案公報 第557號 發刊 | 28日 ◇特許公報 第709號 發刊 | ◇特許公報 第710號 發刊 |
| 13日 ◇工業所有權相談 實施 | ◇第39回 工業所有權短期研修講座(第3日次) | 29日 ◇特許公報 第711號 發刊 | ◇特許公報 第711號 發刊 |
| 14日 ◇特許公報 第705號 發刊 | 23日 ◇特許公報 第708號 發刊 | 30日 ◇實用新案公報 第559號 發刊 | ◇實用新案公報 第559號 發刊 |
| 15日 ◇商標公報 第212號 發刊 | ◇優秀發明試作品製作 技術選定委員會議 開催 | 31日 ◇商標公報 第213號 發刊 | ◇海外特許公報 第68號 發刊 |
| 16日 ◇意匠公報 第317號 發刊 | ◇第367回 이 週의 優秀發明 | | |